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2일, 한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지아의원)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도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급성기 정신질환’에서 ‘급성기’는 만성기에 대비하여 임상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정신질환 증상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되어 집중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의미하는데, 아직까지는 급성기에 대한 객관화된 기준이 없어서 특정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담당 정신건강전문의의 판단에 따르고 있는 실정임.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입원은 만성화되거나 급작스러운 증상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의료자원과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도록 지정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성을 요하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효과적

인 의료서비스가 투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임상에서 통용되는 개념은 차치하더라도 법률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의 명확한 정의나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과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지정의 요건이나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도 결부된 문제이므로 향후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한 입법례로서 장애인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5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이나 집중치료병원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를 규정할 보건복지부령 정비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